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66
----------	-------

제출년월일: 2026. 7. .

제출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9기 구정비전인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특히 AI 기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지원체계 강화, 통합돌봄 및 1인가구 돌봄 기능 강화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중심의 조직을 구축하고,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통합과 부서 간 기능 재배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 행정지원국 ⇒ 행정관리국
- 재정관리국 ⇒ 기획재정국
- 관광경제국 ⇒ 문화경제국
- 교육체육국 ⇒ 미래교육국
- 복지동행국 ⇒ 복지국
- 도시관리국 ⇒ 도시환경국

나. 국 기능 재편

- 환경녹지국을 폐지하고, 깨끗한마포과와 자원순환과를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며, 맑은환경과는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녹지과와 함께 도시환경국으로 이관

다. 부서 신설 및 기능 강화

- 기획·예산 기능 통합
 - 새마포담당관 + 예산정책과 → 기획예산과
- 청소행정 기능 통합
 - 깨끗한마포과 + 자원순환과 → 청소행정과
- 청년정책과 신설
 - 청년정책·청년창업·청년활동 지원 기능 전담
- 통합돌봄과 신설
 - 통합돌봄, 1인가구 지원 및 마음돌봄 기능 강화

라.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 | | |
|-------------------|-------------------|
| ○ 행정지원과 ⇒ 총무과 | ○ 경제진흥과 ⇒ 지역경제과 |
| ○ 실뿌리복지과 ⇒ 생활보장과 | ○ 어르신동행과 ⇒ 어르신정책과 |
|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과 | ○ 주택상생과 ⇒ 주택과 |
| ○ 건축지원과 ⇒ 건축과 | ○ 맑은환경과 ⇒ 환경과 |
| ○ 주차관리과 ⇒ 교통지도과 | ○ 보행행정과 ⇒ 건설관리과 |
| ○ 도로개선과 ⇒ 도로과 | ○ 물관리과 ⇒ 치수과 |
| ○ 건강동행과 ⇒ 건강증진과 | |

마. 국 간 부서 이동

- 홍보미디어과를 부구청장 직속 홍보담당관으로 재편
- 환경녹지국 깨끗한마포과와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로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이관

- 재정관리국 스마트정책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
- 교육체육국 체육진흥과를 문화경제국으로 이관
-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를 미래교육국으로 이관
- 환경·공원녹지 기능을 도시환경국으로 이관
- 국별 건제순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정책 추진체계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6. 7. 1. ~ 7. 2.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경제국, 미래교육국, 복지국,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마포담당관과”를 “홍보담당관과”로, “새마포담당관은 구정 기획·조정·평가, 의회협력, 공약사업 관리, 구민소통, 법제심사 및 송무”를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 언론보도, 미디어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조사·민원관리·심사·환경순찰”을 “청렴, 감사, 조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계약심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지원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민원여권과”를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구민안전과·청소행정과·민원여권과·스마트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을 “지원, 자원봉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공무원 복무 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자 지도·감독,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용, 규격봉투 제작·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추진,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5조(중전의 제8조) 및 제6조(중전의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재무과·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기획·조정·평가, 의회협력, 공약 사업 관리, 구민소통, 예산 편성·배정·교부,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 법제심사 및 송무, 지방공기업, 통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약, 물품관리, 지출·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세·국세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경제국) ① 문화경제국에 관광정책과·지역경제과·문화예술과·고용협력과·청년정책과·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정책, 관광사업, 관광시설 운영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지원, 동물보호,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발전, 출판·영상·게임·공연장 등 등록 및 관리, 종교사무,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용정책, 고용사업, 사회적경제 상생기반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청년창업,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교육체육국)”을 “(미래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체육국에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과·보육정책과·체육진흥과”를 “미래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과·보육정책과·가족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체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포구 미래교육지구”를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족복지·양성평등·아동복지시책 추진,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보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복지동행국)”을 “(복지국)”으로 하며,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복지동행국에 복지정책과·실뿌리복지과·어르신동행과·장애인복지과·가족정책과”를 “복지국에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통합돌봄과·어르신정책과·장애인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뿌리복지 시책”을 “생활보장시책”으로, “지원, 자원봉사”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돌봄 및 돌봄SOS시책 추진, 1인 가구 지원, 자살예방 시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국에 주택상생과 · 도시계획과 · 건축지원과 · 부동산정보과”를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 도시계획과 · 건축과 · 환경과 · 공원녹지과 · 부동산정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 임대사업”으로 한다.

4. 환경보전,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원 · 녹지 관리 총괄, 산림 보호, 조수 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 · 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 ·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스마트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 · 주차관리과 · 보행행정과 · 도로개선과 · 물관리과”를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건설관리과 · 도로과 · 치수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 · 위생과 · 건강동행과 · 의약과”를 “보건행정과 · 위생과 · 건강증진과 · 의약과”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5장 제16조) 제8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인사혁신팀장”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구본청·보건소의 국·담당관·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고용협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4호 중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5호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6호 중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제7조 중 “운수질서 관리팀장”을 “운수관리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 보행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건설 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8조3항 중 “예산정책 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물관리 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관국란 중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을 “행정관리국(총무과)”으로, “복지동행국(어르신동행과)”을 “복지국(어르신정책과)”으로,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을 “복지국(장애인정책과)”으로, “관광경제국(경제진흥 과)”을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으로, “도시관리국(부동산정보과)”을 “도 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제4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제7조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깨끗한마포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2항 중 “자원
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제12조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
정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자원순환과장”
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2
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재활용관리팀장”을 “자원재
활용팀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깨끗한마포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8조 중 “맑은환경

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복지동행국장”을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으로, 제19조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총무과장”으로, 제7조제1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17조제2항제2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가족행복지원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깨끗한마포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8조 중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③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업무”를 “장애인정책업무”로 한다.

③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③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제3조제4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④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④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④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④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통합지원 업무담당 팀장”을 “통합지원협의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⑥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라. 별지 제9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④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⑤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미디어채널팀장”을 “미디어팀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어르신동행과장”을 “어르신정

책과장”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제4항 중제2
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중 “도로
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 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교육체 육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 설국을 둔다.</u>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u>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경 제국, 미래교육국, 복지국, 도시 환경국</u> ----- -----.
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u>새마포담 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새마 포담당관은 구정 기획·조정· 평가, 의회협력, 공약 사업 관리, 구민소통, 법제심사 및 송무 등 을,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 민원관리·심사·환경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u>	② ----- <u>홍보담당관</u> <u>과</u> ----- <u>홍보</u> <u>담당관은 구정홍보, 언론보도,</u> <u>미디어에 관한 사항</u> ----- ----- ----- <u>청렴, 감사, 조</u> <u>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계약심</u> <u>사</u> -----.
제4조(행정지원국) ① <u>행정지원국 에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 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민원 여권과를 둔다.</u>	제4조(행정관리국) ① <u>행정관리국 에 총무과·자치행정과·구민안 전과·청소행정과·민원여권과 ·스마트정책과</u> ----- -----.
② <u>행정지원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② <u>행정관리국장</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거, 주민등록, 동행정, 동청
사 관리, 행정구역 조정, 주민
자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지
원에 관한 사항

3. 구정홍보, 언론보도, 미디어에
관한 사항

4. (생 략)

<신 설>

6. (생 략)

5. (생 략)

<신 설>

제8조(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
에 예산정책과 · 스마트정책과 ·
재무과 · 징수과 · 재산세과 · 지
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재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편성 · 배정 · 교부, 투자
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 지방

2. -----

지원, 자원봉사-----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공무원 복무 관리, 생활폐
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
용, 규격봉투 제작·관리, 음식
물류 폐기물 관리,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유
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정보화 추진, 전산운영, 정보
통신,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
에 기획예산과 · 재무과 · 징수과
· 재산세과 · 지방소득세과를 둔
다.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기획·조정·평가, 의회협
력, 공약 사업 관리, 구민소통,

공기업, 통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추진, 전산운영, 정보

통신,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

약, 물품관리, 지출·회계, 결

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국세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 개별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

사·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

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

화예술과·고용협력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정책, 관광산업, 마포순환

열차버스 운영 등 관광활성화

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상점가·소상공인 지원, 동물

보호, 스마트팜 업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발

전, 출판·영상·게임·공연장

등 등록 및 관리, 종교사무, 문

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배정·교부, 투자심

사 및 재정계획 수립, 법제심

사 및 송무, 지방공기업, 통계

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

약, 물품관리, 지출·회계, 결산

에 관한 사항

3. 지방세·국세 부과 및 징수, 세

외수입 총괄 및 징수, 개별주

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경제국) ① 문화경제국

에 관광정책과·지역경제과·문

화예술과·고용협력과·청년정

책과·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정책, 관광사업, 관광시설

운영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

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상점가·소상공인 지원, 동물

보호,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발

전, 출판·영상·게임·공연장 등

등록 및 관리, 종교사무, 문화

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

4. 고용정책, 고용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상생기반,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제6조(교육체육국) ① 교육체육국에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과·보육정책과·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체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교육시설 관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제5조(복지동행국) ① 복지동행국

항

4. 고용정책, 고용사업, 사회적경제 상생기반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청년창업,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교육국) ① 미래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과·보육정책과·가족정책과-----

② 미래교육국장-----

1. -----
----- 교육청 협력사업 -----

2.·3. (현행과 같음)

<삭제>

5. 가족복지·양성평등·아동복지시책 추진,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보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

에 복지정책과 · 실뿌리복지과 ·
어르신동행과 · 장애인복지과 ·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동행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실뿌리복지 시책 추진, 고독
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
굴 ·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대상자 조사 · 관리 및 보
장 결정, 의료급여 및 자활 지
원, 차상위계층 지원, 자원봉사
에 관한 사항

<신 설>

3. · 4. (생 략)

5. 가족복지 · 양성평등 · 아동복
지 시책 추진,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보호, 다문화가족 ·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
에 깨끗한마포과 · 자원순환과 ·
맑은환경과 ·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책과 · 생활보장과 · 통합돌봄
과 · 어르신정책과 · 장애인정책
과-----.

② 복지국장-----
-----.

1. (현행과 같음)

2. 생활보장시책 -----

----- 지원-----

3. 통합돌봄 및 돌봄SOS시책 추
진, 1인 가구 지원, 자살예방
시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1.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공무원 복무 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후담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관리 총괄, 산림보호, 조수 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상생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10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
-.

② 도시환경국장-----
-----.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보전,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후담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신 설>

4.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추진,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거래 관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를 둔다.

② (생략)

제14조(직제 및 업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동행과·의약과를 둔다.

② (생략)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⑦ (생략)

⑧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 관리 총괄, 산림 보호, 조수 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스마트팜 업무에 관한 사항

6. -----
- 도로명주소, 임대사업-----

제11조(교통건설국) ① -----
---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도로과·치수과-----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직제 및 업무) ① -----
-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총무과장-----

는 인사혁신팀장으로 한다.

⑨ (생 략)

인사팀장-----.

⑨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윤지현
연 락 처	02-3153-8217